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『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』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를 2,503명에서 2,522명으로 조정 (증원 19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43명 ⇒ 1,462명 (증원 19명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6명 (변동없음)

의안전문 : 별 첨

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503명”을 “2,522명”으로 하고,
동조제1호중 “1,443명”을 “1,46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503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43</u>명</p> <p>2. 내지 4.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</p> <p>..... <u>2,522명</u></p> <p>.....</p> <p>1. : 1,462명</p> <p>2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